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한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1

발의년월일: 2016년 5월 17일
발 의 자: 한동진, 구본승, 김영준, 장동우, 김명숙, 이정식, 유인애 의원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립생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마련 등 구청장 책무 명시(안 제3조)

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자립생활주택 설치 및 주거생활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1조)

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 조직 및 운영, 사업을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감독, 제재 조치를 규정함 (안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장애인복지법」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반영

다. 사전협의: 생활보장과

라. 기타

1) 입법예고(2016. . . ~ 2016. . .) 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5. “동료상담”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6.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경험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주거서비스”란 자립생활주택 설치·운영,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보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단체, 조력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보조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가정지원사업
5. 자립생활 교육 및 기술훈련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
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8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전환사업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정착금, 주택자금 지원 등 서울특별시장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전환사업 전반에 관하여 강북구 장애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주거서비스

제10조(자립생활주택 설치) 구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강북구 장애인 및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아파트를 포함한다)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12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조직 및 운영) ①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장애동료 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자립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동
2. 동료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주택 운영
5.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
6. 활동보조서비스
7.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8. 주택 개보수 사업
9.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10. 그 밖에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자립생활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한다.

1. 이용자 대표
2. 후원자 대표
3. 여성 장애인
4. 장애인 관련 학계 또는 실무 전문가
5. 장애인 단체 및 기관 종사자(장애인 당사자 포함)

6. 강북구 업무 관련 공무원

③ 위원장은 장애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립생활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자립생활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지도 · 감독) ①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재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립생활센터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5장 보 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자립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관 계 법 령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4.7.]

제40조의2(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①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담**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장애인의 심리적인 고충

2.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방법

4. 기타 장애인이 처한 곤란한 문제 등의 대처방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센터로 하여금 **장애동료 간 상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4.7.]